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와 관세사의 역할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



01. 한-중 FTA와 FTA 추세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가 타결된 지 1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서비스투자)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FTA 협정 타결 후 추진하였던 모든 협정의 국회비준이 완료되었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비중이 21.4%로 가장 높고 이제까지 체결된 FTA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다. 전통적인 경제통합에서 지리적 인접성은 기본적 요인으로, EU, NAFTA 등 많은 경제통합체는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왔다.

또한 심리적 거리 역시 무역확대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류의 중심국가로서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관광객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여타 FTA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확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국제무역환경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메가 FTA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① 메가 FTA는 원산지규정의 단일화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의 장점이 있어 보다 활발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2. FTA 활용률 제고 노력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여야만 FTA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FTA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거대경제권인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면서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민간기관에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

FTA의 활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2010)」는 북미, 유럽 사례로 볼 때, 2015년에 우리나라의 FTA 평균 유효수출활용률을 최소 80%대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한 바 있다.^②

① 우리나라는 아직 12개국으로 구성된 TPP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② 인하대 산학협력단, 「FTA 활용활성화방안 연구」, 2010.10, pp.90-91.

관세청(201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③은 66.9%로 전년보다 4%p 상승하였다. EU(80.9%) 및 미국(76.4%)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5%), 인도(43%) 등과의 FTA 활용은 저조하였다.^④ 2013년 5월 발효된 한-터키 FTA도 70.2%의 비교적 높은 수출활용률을 기록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인식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체	(단위: %)
대기업	82.7	95.6	57.7	48.9	84.3	98.1	84.5	73.1	76.9	
중소기업	70.6	67.9	29.6	35.4	76.4	56.3	69.2	66.6	57.3	
전체	78.4	80.5	38.5	43.0	80.9	92.0	76.4	70.2	66.9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3년 12월

③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 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이다.

④ 낮은 관세양하, 복잡한 원산지증명 등으로 FTA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03. 수출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원산지관리 현황

이제까지 FTA 활용 지원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 기대했던 활용률 제고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의 문제점을 수출중소기업의 규모와 원산지관리의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중소기업 현황을 보면,^⑤ 2012년 수출중소기업 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85,866개이며, 금액별로는 5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가 35,843개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전체 중소 수출업체의 52.1%가 10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였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4,459개사로 전체의 16.9%에 불과하였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3,992개사로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정부의 500만 달러 이상 강소 수출기업 육성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수출금액별 중소기업 현황

업체구분	업체수	비중	누적업체수	누적비중
5만 달러 이하	35,843	41.7	35,843	41.7
5만 달러 초과~10만 달러 이하	8,865	10.3	4,708	52.1
10만 달러 초과~50만 달러 이하	19,726	23.0	64,434	75.0
50만 달러 초과~100만 달러 이하	6,973	8.1	71,407	83.2
100만 달러 초과~500만 달러 이하	10,467	12.2	81,874	95.4
500만 달러 초과~10억 달러 이하	3,992	4.7	85,86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⑤ 장상식 외,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 2, pp.6-8.

둘째, FTA 수출활용률 제고의 관건은 원산지 문서관리 특히, 정확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다.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자료이고 사후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자료이기 때문이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업체와 수출용 원자료 공급업체가 발급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수출과 관련 없는 국내부품 납품업자(협력업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평가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사실 수출과 거의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에 정확한 원산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협력업체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원산지관리에 있어 사후검증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만 있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수출기업을 거래업체로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자 또한 FTA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업체 내 업무 비중은 낮아 원산지관리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협력업체는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정보, BOM, 원산지별 재고, 원산지증빙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하나, ERP 등 시스템 미비와 재고관리 미흡으로 FTA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산지관리업무를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평가에 기초한 가격결정, HS Code 분류, 충분가공 및 직접운송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협력업체로서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중소기업의 예산 부족 등으로 추가인력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1인이 2역에서 3역까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갖고 있다.

〈표3〉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업무 및 현황

	주요 업무	현황
관리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판정 기초 정보 - BOM(Bill Of Material) - 원산지별 재고 - 원산지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등 시스템 운영미비와 재고관리 미흡 ⇒ FTA 판정 및 사후관리 부실 불가피
전문성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기준 - 관세평가에 기초한 가격결정 - HS Code 분류 - 충분가공 및 직접운송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원산지 규정 숙지 및 적용 어려움 ⇒ 전문성 확보 사실상 불가능

04. 활용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FTA 활용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전문성과 영세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전문가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기존 연구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는 전문인력 부재이다.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2010)」는 다음과 같은 FTA 활용지원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⑥ 첫째, 실무자 및 CEO교육, 원산지관리사 육성, FTA 동영상, 대학 강좌 개설 시 초기 세팅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불리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관리 실무전문가의 육성·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FTA 교육과정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 원산지 증명 등 활용방법에 대한 내실 있는 CEO교육 및 실무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FTA 교육프로그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화 및 중복교육의 최소화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인하대 산학협력단,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2010.10, pp.106-7.

이러한 육성방안에 맞추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전문교육 실시, 대학 강좌의 개설 지원,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매년 꾸준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2010)」에 따르면,^⑦ FTA 활용과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품목분류, 관세평가,^⑧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전문지식을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비교적 쉽게 갖출 수 있는 인적 집단은 세관공무원과 관세사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관공무원 중 다수의 인원을 FTA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관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산지확인서 작성·발급에는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최근 원산지관리사 이외에 원산지실무사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대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단시간의 한시적 교육만으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을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은 상당기간의 실무와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⑦ 대외정책경제연구원,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2010.12.15, p.312.

⑧ FTA 원산지규정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경우 형상 전제가 되는 것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이나 본선인도조건(FOB) 등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는 수출국내의 운임 등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만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전제가 되는 것이 관세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국가의 FTA에서도 동일하다.

FTA는 관세양허 스케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장차 필요한 원산지관리 인력을 추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 후 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FTA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분야별 수출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앞선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2010)」 연구는 현실적으로 FTA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도 관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관세사 100여 명을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공익관세사의 활성화는 기존 세관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중소기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일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산지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협력업체는 안정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으로는 안정적인 원산지관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전담자의 여부 등 중소기업의 여건에 따라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관세사에게 원산지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세사에게 아웃소싱하는데 따른 예산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는 사후검증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관련 소명자료를 관리하고, 검증기관의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수많은 원자재 품목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떨어지므로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 활용 시 겪는 원산지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FTA-PASS를 무료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1,850개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⑨ 앞으로도 FTA-PASS는 계속 보완되고 보다 정교하게 진화될 것이며, 수출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사가 무료로 개발·보급되고 있는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간 원산지관리에 대한 교육,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수출기업은 혜택 없이 비용과 검증부담만 가중되는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업체는 수출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확보하기 위해 겪는 고충을 알아야 한다.

수출기업은 FTA에 따른 경제적 과실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면서 상생협력을 이루길 기대한다.

⑨ 이명구,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현황과 무역업계의 대응방안, 관세와무역, 2015.10, p.22.
